

다문화 상생 마을 추진 조례

에도가와구에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 및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고 자란 국가 및 지역이 다르면 문화나 생각,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는 한사람 한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성이 있는 마을은 여러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함께 지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활력 있는 마을로 발전합니다.

서로의 문화를 소중히 지키며 모든 사람이 지역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간다. 그런 다문화 상생 마을을 지향하기로 선언하며 이 조례를 정했습니다.

(목적)

제 1 조 이 조례는 함께 사는 마을을 지향하는 조례(2021 년 6 월 에도가와구 조례 제 19 호)의 이념에 따라 한사람 한사람의 다름을 존중하는 다문화 상생 마을 실현을 위한 시책(이하 ‘다문화 상생 시책’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함께 에도가와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책무 및 구민 등 및 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 2 조 이 조례의 다음 각호에서 제시한 용어의 의미는 각각 각해 각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1. 다문화 상생 마을: 국적, 민족 등이 다른 모든 사람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인정하며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말한다.
2. 구민 등 에도가와구내(이하 ‘구내’라고 한다.)에 살고, 또한 구내에서 일하고 혹은 배우는 자 기타 구내에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 구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기본이념)

제 3 조 다문화 상생 마을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1. 모든 사람이 국적, 민족 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인권을 존중받고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
2. 다양한 문화에서 배양된 지식, 경험 등을 활용하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

(구의 책무)

제 4 조 구는 전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다문화 공생시책을 종합적이자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책무가 있다.

2. 구는 다문화 공생시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3. 구는 다문화 공생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구민 등 및 사업자의 역할)

제 5 조 구민 등 및 사업자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구가 실시하는 다문화 공생시책에 협력하도록 힘쓴다.

(다문화 공생시책)

제 6 조 구는 다문화 공생시책으로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실시한다.

1. 구민 등 및 사업자가 다문화 상생 마을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계발 또는 홍보활동
2. 국적,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의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교류 기회 창출
3. 다언어 및 알기 쉬운 표현으로 행정 정보의 발신, 상담 체제 정비, 일본어 교육을 추진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4. 국적, 민족 등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 육아 및 복지 서비스, 재해 시의 지원 등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아 안심하고 자신답게 살기 위한 생활 지원
5. 전 각호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실시하고, 또는 연계하여 협력하는 거점 마련 및 운영
6. 다문화 공생시책에 관한 조사 연구 기타 에도가와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추진 체제 정비)

제 7 조 구는 다문화 상생 마을을 추진하기 위해 구민 등, 사업자 및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체제를 정비한다.

(변화에 대응)

제 8 조 구는 장래 환경 및 사회적 상황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필요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한다.

(위임)

제 9 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조례의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에도가와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